제301회 임시회 (2023. 4. 20. ~ 4. 26.)



의 안(議案)



목 차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안(기획감사실)	 5
금정구-신안군과의 자매결연체결 보고안(총무과)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총무과)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26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3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평생교육과)	 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4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4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전관리과)	 5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5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보건행정과)	 59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정도서관)	 67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가. 전국 원전 동맹은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어, 전담 사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나. 조직의 공신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
- 다. 행정협의회 전환으로, 조직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 간의 협력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제1조~제4조)
- 나.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제5조~제8조)
- 다. 협의회의 회의, 소집, 의결, 실무협의회(제9조~제12조)
- 라. 협의회의 수입, 지출,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계인수(제13조~제16조)
- 마. 협의회의 규약개정 · 폐지, 기타(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9조~제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6조~제10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협의회 창립 첫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재정부담

※ 2023. 제1회 추경 반영

▷ 협의회 회비는 정례회에서 결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2023. 4. . 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은 원전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있는 "별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원전이 소재한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 3.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 4.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례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회장도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파견직원은 사무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 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정례회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10조(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회장이 되고, 회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을 회원으로 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공통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도 협의회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재 정

-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 ②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한다.
 - ③ 특별회비는 신규 행사·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협의 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례회에서 예산편성 과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 제17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
-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회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0월 23일 제정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운영회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초대 임원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23개 기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O 협의회 참여에 따른 경비 소요(규약 제13조)
 - 협의회 회원은 연회비와 특별회비 납부
 - 창립 첫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특별회비 부담 단. 연회비는 정례회에서 결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O「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O 본 안은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O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오일선 (☎ 519-4013)

금정구-신안군과의 자매결연체결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전라남도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 협력의 범위를 확장 하고 상호 가 발전 도모

○ 행정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도농 상생 경제 실현

2. 주요내용

○ 결연대상 : 부산 금정구 ⇔ 전남 신안군

○ 결연일시 : 2023. 6월 중

O 결연장소 : 금정구청

○ 결연방법 : 양 기관 대표단 참석 하에 자매결연 체결 ▷ 내용 :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조인식(협정서 교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정구 자매도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 등)

② 구청장은 <u>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u>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그간의 추진 경과

- 신안군 특산물 장터 운영

▷ 운영기간 : 1999년 ~ 2011년

▷ 주 최 : 금정구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여성단체장협의회

▷ 판매품목 : 소금(천일염), 새우젓, 다시마 등

- 우호교류 위한 신안군 홍보 부스 및 농수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 신안군 제안

▷ 2022 금정산성축제

· 일 자 : 2022. 10. 29.(토) ~ 10. 30.(일) [2일간]

• 내 용 : 김장용품, 농산물 판매 및 신안군 홍보 부스 운영

▷ 2022년 금정구민 한마음체육대회

· 일 시 : 2022. 11. 5.(토) 10:00 ~ 15:00

• 내 용 : 김장용품, 농산물 판매 및 신안군 홍보 부스 운영

- 신안군 대표단, 금정구 방문

▷ 방문일시 : 2022. 11. 10.(목)

▷ 방 문 자 : 7명(신안군수, 천일염지원과장, 대외협력팀장 외 4명)

▷ 주요내용 : 금정구·신안군 자매결연 제안, 지속적 교류로 상호 우호 증진 노력 등

- 금정구 대표단, 신안군 방문

▷ 방문일시 : 2023. 3. 30.(목) ~ 3. 31.(금)

▶ 방 문 자 : 7명(구청장, 총무과장, 총무팀장, 구민지원팀장 외 3명)

▷ 주요내용 : 자매결연 추진 위한 주요 교류 분야 및 신인군 명예성 공유 시업 논의 등

다. 주요 교류형태

- 주요 행사 시 방문 교류 : 양 도시 대표 축제 방문 교류

▷ 금정구 : 금정산성축제(5월)

▷ 신안군 : 섬수선화 축제, 임자도 튤립 축제 등(4~5월)

- 도농협력 생산자-소비자 간 농·수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

▷ 직거래 장터 운영(신안군) → 금정산성 축제 등 이용

→ 품질 좋은 신안군 농・수 특산물 가격 경쟁력 기대

- 신안군 명예석 공유 사업 추진 : 관광지 할인 혜택 등

라. 양 도시 일반현황

=	구 분	금 정 구	신 안 군
C	인 구	약 22만1천명	약 3만8천명
Ę	면 적	65.2km²	655.81 km²
세지	공무원	831명	816명
행정 조직	조직 현황	4국1실21과, 1직속기관 2사업소, 16읍면동	2실국19과, 2직속기관, 11개 사업소, 14읍면동
재:	정수준	6,304억원	6,768억원

붙임 신안군 일반현황. 끝.

붙임 신안군 일반현황

신안군 일반현황

소 재 지	전년	古。	신안	Z 9]해.	옵 천	사로	1004	1								
신안군수	\display	d 5	명 자)	9.7	・馬」	-	생년 (소속		- TA	9.14 세작	0.3	력	 > 일본 오사가대학교 법학과 석사취득(1995) ▶ 목포대 명예교육학 박사취득(2010) 		95)		
	Ą	4 5	명	연	령			주 오	요 경	병			701#	Ą	성명	소속	정당
부 군 수	Ħ,	형	ģ	58	제		전	가남도 산력	동부]휴양	지역본 가장	부	- 57 5 2	군의회 의 징	8 7 8	혁성	더불어	민주당
연 혁	ht	lps	://w	ww	shi	nan	go k	r/ho	me/w	ww/a	boul	/his	story/pa	age.w	scms	/참고	
		-0.5			행정	17º	벽			→ 10 00 00	현적	33	01 =	수(명	0	구미	이나
행정구역 형 황	٨	1	-	2	구	E	ì	면	동	(km²)		I	116	*/	군민의날	
8						2	2	12		65	5,8	l	38	,165	5	4.	15.
				조	직					공	무원	정원	A		예신	규모(억원)
조 직 및 공 무 원	실국	P	를 청 당당관	和日	직속 기관	시업소	유명동	계	정무	3급	4급	5급	6급 이하	기타	계	일반	특별
	2	19			2	11	14	816	1		4	51	716	45	6,768	6,473	295
		군화 군			군	목	목 군조			d	Bl				축 제		
상 징 물		訓号	·화	-	仝に	무	무 갈매기			1004				수선화,튤립축제(4,5월) 흑산도홍어축제(5월)			
군정목표 및 주요시책		군 친	민과 환경	함 ⁷ 농	제하 수산	물을	별린 통학				. <u>.</u>		군 사람을 -른 생태				
자매결연 현 황			129,849	왕	등 군 청군	, 김 , 서·	해시. 울 은	평티	시, 3 / 17	나남시	, 철	40	구, 노 ⁴ , 영동군				
관 광 지													의 정원 석미술			E, 가기	시도,
체육시설	77	공차	· 세육	시설	33	3개(신안	군민치	세육관	&공	설운	동장	. 신안	국민처	육센E	1 등)	
지역여건		(j	근화.	경	제)	사겨	절 :	꽃피 는		1島			조성, 계자연두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생활・학교・노인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를 위한 시업과 지원에 관한 시항(안 제3조~제6조)

나. 금정구체육회 지원 사항 (안 제7조)

다. 지원 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라.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2023년 본예산 기편성)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 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
 -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

-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
-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
-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조(학교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 제6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 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다.
 - 1. 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 2.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 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

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2.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3.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 요인
 - O 관련조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 진흥 조례」 제7조
 - O 금정구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2. 비용추계 전제
 - 금정구 체육회 대상 기지급 중인 운영비 등 지원 사항 반영
 - O 매년 인건비 상승률 반영
- 3.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체육회 운영비 등	389,851	401,848	409,884	418,083	426,444	2,046,120
	총 비용	389,851	401,848	409,884	418,083	426,444	2,046,120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122,752	125,207	127,711	130,265	132,870	638,805
	시비	61,680	62,913	64,171	65,455	66,764	320,983
구비	일반회계	205,419	213,728	218,002	222,363	226,810	1,086,332
	합계	389,851	401,848	409,884	418,083	426,444	2,046,120

- 5. 부대의견 : 기편성 금정구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반영한 비용 추계
- 6. 작성자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신재훈(☎519-412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O 구 체육회 운영비
 - ▷ 구 체육회 보조 60,000천원 (시비 30,000천원, 구비 30,000천원)
 - ▷ 구 체육 사무실 임차료 5,000천원 (구비)
- O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 ▷ 체육지도자 기본급 245,504천원 (국비 122,752천원, 구비 122,752천원)
 - ▷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79,347천원 (시비 31,680천원, 구비 47,667천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정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1. 19.)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 광역시 금정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한다.

-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
	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장
	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
	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
	<u>다.</u>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u>인건비</u>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
	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u>하는 경비</u>
<u>제6조·제7조</u> (생 략)	<u>제7조</u> ㆍ <u>제8조</u> (현행 제6조 및 제7
	조와 같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관련조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6조
- O 금정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O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O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 ※ 부산시 내 장애인체육회 기설립 된 기초자치단체(연제구, 북구, 사상구) 운영비 참고

4. 작성자

O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신재훈(☎519-4124)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세무1과장)

1. 제안이유

조례 간소화를 추진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르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별표 2는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호사목)
- 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자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 2) 입법예고(2023. 2. 3.~2. 2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제5조제1항제2호사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혉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2.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5・18민주유공자예우에</u>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라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_ 제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7조-----유족 또는 가족 아. (현행과 같음) 아. (생 략) 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 자.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직계존속 • 비속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u>정보공개 수수</u>	료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u>정보공개</u>	수수로	로 (제3조제2항	관련)
코레	공개방볕	및 수수료	<u> </u>	제>			
공개 대상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II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 테이프 등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태이프(비디오자료) 의 복제 - 1편이 1를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 로 필 름·슬라 이드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7 -N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대상	열람·시청	· 복제물
	컷마다 100위	· 1장 초과마다 150원
		1.9 조취하여 100년
	○ 슬라이드의 시청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컷마다 200원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	○ 사본(종이출력물)
	·사진 등)의 열람	- A3 이상 300원
	- 1일 1시간 이내 :	· 1장 초과마다 100원
	무료	- B4 이하 250원
	- 1시간 초과 시 30분	· 1장 초과마다 50원
	마다 1,000원	
	1 1,000 E	
		○ 전자파일(문서·도면·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사진 등)의 복제
	·비디오자료)의	- 무료
	시청・청취	
	- 1편: 1,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30분 초과 시 10	
	분마다 500원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
전자		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		사본(종이출력물) 수수
		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
		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
		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
		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L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 한다.
- 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가 많다면 환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공개	공개방법	및 수수료
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월념 : 시장	· 복제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문화관광과장)

1. 제정이유

○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장 주변 주차난 및 교통혼잡 해소

○ 구민의 지역축제장 방문 증진을 통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셔틀버스, 지역축제장, 이용자) ▷ 안 제2조

다. 셔틀버스의 운영 ▷ 안 제3조

라.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2. ~ 3. 22.)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의견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2. "지역축제장"이란 금정산성축제, 정월대보름행사, 구민체육대회 등 부산 광역시 금정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운행 노선) 노선은 이용자의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O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경비 소요(조례안 제3조)
 - 행사장 위치 및 특성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이 필요한 축제에 한해 운영 예시) 금정구민운동장, 금정산성광장

2. 미첨부 근거 규정

- O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근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O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O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 김명숙 (☎ 519-406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평생교육과장)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가입하여 참여 중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 제175조에 의거하여 협의회 폐지를 보고함.

2. 협의회 현황

가. 협의회명: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일: 2018. 3. 31.

다. 설립목적 :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라. 주요사업

- 1)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 사업모델 개발
- 2)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
- 3) 지방정부 간, 일반자치(지방정부)와 교육자치(교육청)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 모색 등

마. 분 담 금 : 5,000천원(연 1회)

바. 회원도시 : 64개 지방자치단체(2023.1.1.기준)

(서울) 24 (경기) 21 (인천) 1 (강원) 2 (대전) 2 (충남) 4 (부산) 3 (울산) 1 (전남) 6

- 우리구 가입일 : 2020. 10. 22. ▷ 제5기 임원도시(부회장)

3. 주요내용

가. 폐지사유

-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 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로 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정기총회 심의 결과(폐지 찬성 58, 미응답 6)에 따라 협의회 폐지
- 2) 폐지의결 결과(통보) : (회장) 송파구 교육협력과-5147호(2023. 3.28.)

나. 분담금 잔액 분배

1) 분담금 잔액 : 총 796,846,354원

2) 분배기준 : 납부 횟수(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납부횟수(회)	2회	3회	4회	총 계
도 시 수(개)	14	10	40	64
분배비율(%)	0.9	1.4	1.8	-
분배금액(원)	7,310,520	10,965,780	14,621,030	796,846,280

✓ 금정구 총 분담금 납부액: 10,000,000원
▷ 2회 납부(2021, 2022)

✔ 반환금: 7,310,520원 ▷ 세입조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 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나. 협의회 운영규약 : [붙임 1]

[붙임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8. 3. 31. 제정 2020. 11.17. 개정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된다.
-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 11.17.〉
 -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개정 2020. 11.17.〉
 -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20. 11.17.〉
 -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1.17.>

- **제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17.〉
-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17.>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 〈개정 2020. 11.17.〉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0. 11.17.〉
 -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 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개정 2020. 11.17.〉
- 제12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17.〉
 - ② 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개정 2020. 11.17.>
-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17.〉
 -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0. 11.17.〉
-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0. 11.17.〉

-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별표 1]

회원도시 현황(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023. 1월 현재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 산	북구, 연제구, 금정구	3
인 천	미추홀구	1
대 전	대덕구, 유성구	2
울 산	중구	1
경 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21
강 원	홍천군, 양구군	2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군	4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완도군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평생교육과장)

1. 제안이유

○ 도서관 체계를 재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서관법」의 개정 ('21.12.7. 전부개정, '22.1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제1호의 인용조항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수정함 나.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인용조항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2023. 3. 14. ~ 4. 3.)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을"「도서관법」 제4조제2항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 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u>「도서관</u>	1 「도서관법」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서관을 말한다.	<u>.</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	2「도서관법」 제4조
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	<u>제2항제1호</u>
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환경위생과장)

1. 제안이유

가. 2013년 목욕탕 개업 후 물가 상승을 고려한 이용료 인상이 없었으며,

나. 공공요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선두구동 목욕탕의 경영난 가중에 따라 목욕탕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욕탕 이용료 수정(안 제4조제1항 별표2)

- 지역주민/지역주민 외 목욕탕 이용료 구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2023. 3. 8. ~ 3. 28.) 결과 : 제출의견 1건 ※ 의견서 붙임 참조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의견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목욕탕 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개인			단체		정기이용료 (1개월)	비고
구분	대인	소인	구분	대인	소인		
지역주민	3,000원	2,000원	지역주민	2,700원	1,800원	60,000원	
지역주민 외	5,000원	4,000원	지역주민 외	4,500원	3,600원	90,000원	

- ※ "지역주민"이란 선두구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 ※ "대인"이란 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건 '	7	.판Ч	ادا	ш	-					
현	ō	H S					7	7}	정	안		
[별표 2]				[별.	<u>H</u> 2	2]						
목욕탕 이용료	<u>.</u> (제4조제	1항 관련)				목	욕탕	이용	<u>료</u> (제42	조제1형	· 관련)	
개인	단체	정기 이용료 (1개월)	비고		<i>ז</i>	비인			단체		정기 이용료 (1개월)	비고
대인 소인 대인	소인	- 50,000원		구늯	그 다	인	소인	구분	대인	소인	60,000	
3,000원 2,000원 2,700원	1,700원	<u>50,000</u> 1		<u>지역</u> 주면		<u>000</u> 원	<u>2,000</u> 원	<u>지역</u> 주민	2,700원	<u>1,800</u> 원	<u>영</u>	
				지역 주 의	$\frac{1}{1} \frac{5}{5}$	<u>000</u> 원	<u>4,000</u> 원	지역 주민 외	4,500원	<u>3,600</u> 원	<u>90,000</u> 원	
<신 설> ※ "대인"이란 8세 이상 ※ "소인"이란 7세 이항 ※ "단체"란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달	-의 사람을 이 <u>동일</u> 목	을 말한다.	·시에	* *	<u>사</u> 림 (현형 (현형 "단치	t을 뱅과 뱅과 베"란	말한(같음) 같음) 같음) 안 20명	<u>라.</u> 병 이성		은 목적	<u>등록을</u> 으로 동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3. 8. ~ 3. 28.

○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입법예고결과 : 1건 의견 접수

	제출된 의견	검토 및 조치 내용
제출자	내 용	- '금도 첫 그시 네공
선두구동 단체장 협의회	○ 인근 광천탕(철마면 송정리)의 요금과 동일하게 현행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으로 변경 요청	 ▼반영> ■ 검토 결과 ○ 인근 광천탕과의 형평성 및 선두구동 목욕탕의 건립 취지에따라 지역주민은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 정기이용료(1개월) 60,000원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 외 이용객은 기존안대로 2,000원 인상을 유지하나, ○ 최저임금 및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용증가에 따라목욕탕 운영자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목욕탕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목욕탕의 안정적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안전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금정구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의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안 제1조 ~ 제5조)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다.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등 (안 제7조 ~ 제8조)

라. 안전관리요원, 지원요청 (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8. ~ 3. 29.)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의견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 2.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 4.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8.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 자를 말한다.
- 9.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 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 2. 행사 안전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 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 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7.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 9.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전관리 총괄부서 및 관할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안전 관리계획을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구가 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 ⑥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⑦ 구청장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보완 및 수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 등 유관기관에 긴급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 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6 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 ③ 구청장은 제6조제5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 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관할 소방서장 및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건축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8호)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나.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3. 3. 9. ~ 3. 29.)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6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은	②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
	<u>동개폐장치 설치</u>
<u>8</u> . (생 략)	<u>9</u> .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u>	③ <u>사람</u>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환경,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기간 : 2023년 ~ 2026년(4년)

나. 구 성

▷ 제1장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2장 : 제7기(2019년~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 제3장 : 제8기(2023년~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제4장 :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제5장 :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 제6장 : 성과관리(성과지표 설정 및 세부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보건복지부)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 2023. 3. 23.(목) 11:00, 2층 소회의실

▷ 참 석 : 총 9명(위원 12명 중 9명 참석)

- 구성 : 구의원 1, 공무원 2, 유관기관 1, 학계 2, 의료계관계자 5, 주민대표 1

▷심의결과 : 원안 가결

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요약) : 붙임



제8기(2023년~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요약]

2023. 3.

부산광역시 금정구

□ 지역사회 현황분석

1. 지역현황

금정구는 부산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구 면적은 65.27km로 총면적의 42.3%가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금정산, 윤산, 스포원, 온천천, 수영강을 중심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 인구현황

- 가. 인구는 2021년 228,049명으로 부산시 총인구의 6.7%수준으로 매년 감소세
- 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50,174명(22.1%)으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함.
- 다. 출생아 수는 2017년 1,204명에서 2021년도 74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도 2021년 0.63명으로, 전국 0.81명, 부산시 0.73명보다 낮은 수준임.
 -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정책과,

임신 · 출산 · 양육 서비스 지원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모자보건사업 추진 필요

3. 건강수준

가. 사망현황

- 주요 5대 사망원인은 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임.
- 사인별 표준화 사망률은 신생물(암), 심장질환이 매년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부터 3위가 뇌혈관질환에서 자살로 변하는 추세를 보임.

나.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 2020,2021년 1급 갑염병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모두 코로나19이며, 유행 지속됨.
-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및 국가가 교류 증가로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 신속한 해외오염지역 감염병 의심입국자 추적관리 필요
- 노인인플루엔자 접종률은 2021년 78.4%로 전년대비 4.5%p 감소함.
 - ⊃ 면역 취약계층인 노인 예방접종률 관리 필요

다.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 고혈압, 혈당수치 인지율은 최근 3개년 평균값(혈압 58.2%, 혈당 22.0%)은 부산시 및 전국 평균치보다 낮음.
 - ⊃ 고혈압, 당뇨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강화 교육 필요

- 2021년 뇌졸중,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은 각각 31.5%, 26.7%로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산시(51.0%, 43.9%), 전국(54.2%, 46.8%) 대비 17.2%p, 20.1%p 낮음.
 - →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강화
- 암 수검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 및 부산시 대비 낮은 수준임.
 - ⊃ 전체 검진율 향상을 위하여, 검진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필요
- 흡연율(30대 남자), 고위험음주율(30대), 걷기실천율(청·장년층), 비만율(30대), 건강생활실천율(40대), 저작불편호소율(65세이상) 개선을 위한 사업별 취약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라. 치매

-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임.
 - →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로 적극적 예방과 대처 필요

마. 정신건강

- 금정구 자살률은 사망원인 3위에 해당하며 전국 및 부산시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증가세임.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 유병률도 증가 추세임.
 -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자살예방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 건강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4. 지역보건의료자위 현황

- 금정구보건소는 1991년부터 현 위치에서 업무를 해왔으며, 구청 별관 4·5층을 증축하여 건강증진과를 설치하고, 2018년 6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음.
- 의료취약지역인 서금사지역에 금정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6년 10월 개소하였으며, 보건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장전2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1년 7월 개소하였으며, 서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마을건강센터를 운영 중임.
 - →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보건소 원거리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점으로 동 단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
- 보건소 조직은 2과 6개팀, 현원은 58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비정규직을 채용 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인력확충이 필요함.
- 금정구에는 병·의원 169개소, 정신병·의원 9개소, 치과병·의원 95개소, 한방 병·의원 83개소, 약국 111개소, 응급실 의료기관 1개소가 있으며 선두구동과 금성동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편임.

\prod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3-3			지표 달성현황				달성현황 평가		
전략	성과/	시표	지표 성격	목표 (2022년)	실적 (2022년)	달성 현황	가중치	점수	비고
	치매조기	검진율	결과	11%	8.1%	미달성	16%	0	치매안심 통합관리 시스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강화	암검진	수검률	결과	42.3%	43.2%	달 성	12%	12	국민건강 보험공단 통계자료
70 ₹1	임산부 ·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률	결과	95%	102%	달 성	12%	12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지역	노인 · ' 완 전 접	영유아 종 률	결과	영유아 93% 노인 86%	영유아 89.4% 노인 81.3%	미달성	13%	0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의료서비스 확대로 건강안전망	결 핵 신 치료 스	. 환 자 성 공 률	결과	99.4%	95.4%	미달성	13%	0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용 관리능력	마약류 후 향상	결과	100%	100%	달 성	4%	4	
	남자현재	흡연율	결과	32%	32%	달 성	7.5%	7.5	'21년 금정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지역사회중심	중 등 도 신체활동	. 이 상 ·실천율	결과	29.9%	17.5%	미달성	7.5%	0	'21년 금정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예방적 · 통합적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치료율	결과	91.7% (0.4% 증가)	91.7%	달 성	7 50/	7.5	'21년 금정구
	현 제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결과	89.3% (0.4%증가)	93.0%	달 성	7.5%	7.5	'21년 금정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 살 사 (인구십	· 망 률 만명당)	결과	19명	33.2명	미달성	7.5%	0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방문·대면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치매조기검진율,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신천율이 목표치 미달성하였으며, 병의원 방문을 꺼리면서 노인·영유아 완전 접종률 역시 달성하지 못하였음.
-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의 경우, 항결핵제 부작용 및 잠복 결핵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목표치 미달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우울 등 정신과적 어려움을 커지고 대면사업은 축소 되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음.

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비 전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 도시 금정 구현

기본방향

-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보건행정 환경 조성
- •지역의료서비스 확대로 건강안전망 구축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추진전략, 10추진과제)

추진전략 1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1-① 감염병 대응 체계적 관리

1-②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강화

추진전략 2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

2-①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

2-②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

2-③ 임신 · 출산 · 양육 서비스 지원 강화

2-④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추진전략 3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3-①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3-②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③ 소생활권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 운영)

3-④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IV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과제	담당부서		
		①-1. 취약계층 올바른 손씻기 감염병 예방사업				
Ι.	① 감염병 대응 사업 체계적 관리	1-2.	해외오염지역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	ㅂ꼬		
선제적인 감염병대응체계 구축		1-3.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및 예방교육	보건 행정과		
1 4	②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1	예방접종 강화			
	추진 강화	2-2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			
	①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1	치매 조기진단 강화			
Ⅱ.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확보	②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	2	암검진 수검률 향상			
	③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지원 강화	3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운영 활성화			
	④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4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①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 증진과		
		2-1.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			
Ⅲ.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②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2-2.	맞춤형 신체활동·비만 ·영양사업 추진			
	, ,— ,, 0	2-3.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추진			
	③ 소생활권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건강센터 운영)	3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및 건강공동체 활성화			
	4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4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V.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생략)

VI

성과관리(추진전략별 성과지표)

(단위:%, 명)

추진전략	성과지표명	그ㅂ	현황 목표치				가중치	
구선선탁	정확시표명	구분	(연도)	2023	2024	2025	2026	71871
선제적인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	결과	96.6 ('21년)	92.8	92.9	93.0	93.1	5%
감염병 대응체계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율	결과	100 ('21년)	100	100	100	100	5%
구축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률	결과	81.3 ('22년)	81.5	81.5	81.5	81.5	10%
취약계층	치매조기검진율	결과	8.1 ('21년)	9.0	9.0	9.0	9.0	13%
취약계등 건강안전망 확보	암검진 수검률	결과	43.2 ('21년)	42.1	42.6	43.1	43.6	10%
	신혼부부 산전검사 등록률	결과	8.8 ('22년)	9.0	9.0	9.0	9.0	10%
	혈압수치 인지율	결과	70.6 ('21년)	58.9	59.0	59.1	59.2	10%
지역사회중심	남자 현재 흡연율	결과	36.2 ('21년)	35.7	35.2	34.7	34.2	10%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걷기 실천율	결과	38.7 ('21년)	38.9	39.1	39.3	39.5	10%
신경단되	마을건강센터 이용률	결과	15.1 ('22년)	16.8	18.5	20.1	21.5	12%
	자살률(명)	결과	25.6 ('21년)	25.2	24.8	24.4	24.0	5%

- 성과지표는 매년 시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통계자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통해 도출되며,
-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의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더 나은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활용할 예정임.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금정도서관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안 제1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9조,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2023. 3. 9. ~ 3. 29.)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의견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도서관법」 제27조"를"「도서관법」 제29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를"「도서관법」 제45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서관</u>	제1조(목적) <u>「도서관</u>
법」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법」 제29조
금정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식정보 이용 활성화,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u>「도서관법 시</u>	제적) ① <u>「도서관법」</u>
<u>행령」 제5조제4호</u> 에 따라 자료의	제45조제3항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	
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환・이관・폐	
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MEMA -